

신촌 우리 어린이집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논의 기초 자료

2014. 7. 11.

신촌 우리 어린이집
사회적협동조합 특위

목 차

1. [전체 요약] 논의 배경, 주된 질의, 답변 요약 -----	3
2. [자료 1]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사회적협동조합이다 -----	4
3. [자료 2] 그 동안 법인이 아니어서 힘들었다! -----	11
4. [자료 3]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거예요? -----	12
5. [자료 4] 전환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	15
6. [자료 5] 근데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	20
7. [자료 6] 다른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	23
8. [자료 7] 전환시 절차 -----	26

※ 본 자료는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만든 최소한의 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홈페이지의 “협동조합 제도화 논의” 게시판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논의 배경, 주된 질의, 답변 요약

1.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다(자세한 내용 [자료 1] 참조, 이하 동일)
2. 하지만 그 동안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법인 형태가 불가능했고, 편이상 민법상 조합으로 존재했었는데, 그로 인하여 대표자 명의 등 불편한 부분이 계속 존재했었다([자료 2] 참조).
3. 마침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이 2012년 제정되어 법인 형태가 가능하게 되었고, 기본법 시행 이전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활동한 기존 사업조직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설립 등기 신청을 완료하면 전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공동육아 어린이집들도 올해 전환 기회에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하였고, 이러한 전환 논의와 관련한 주된 질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거예요?

=> 아니요, 하지만 그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자료 3] 참조).

2. 전환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 장점도 있고, 추가되는 부담도 있어요([자료 4] 참조).

3. 근데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 쉽지는 않을 수 있다고 해요. 8,9월 중으로 결론 날 듯 해요([자료 5] 참조).

4. 그런데도 전환을 논의해야 하는 건가요?

- => 네, 8,9월 중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전환하지 않으면 됩니다.
- => 혹 전환이 가능할 때를 대비해서 전환 여부를 7,8월 중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5. 다른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 대부분 논의중이구요, 마포 참나무 등이 전환 진행 중입니다([자료 6] 참조)

6.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 자세한 논의일정은 조만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략 7월에는 본 자료를 토대로 조모임에서 논의하며 질의사항을 주시면, 특위가 질의사항들에 답변하면서, 8월중 열린마루&임시총회를 진행하지요.(전환시 절차는 [자료 7]을 참조하세요)

[자료 1]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사회적 협동조합이었다!

1. 요즘 “협동조합”이 뜨는 이유는 뭐죠?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로 국제적 금융위기에 많은 거대 기업들이 휘청거리고 부도가 날 때, 건실하게 살아남은 기업이 있었는데요, 바로 협동조합기업들입니다.

그러나 보니 협동조합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높아졌구요, 이에 유엔도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선정하고 각 정부의 법적 구축을 유도하기로 했지요.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이 2012년 제정된 것이지요!

2. 근데 “협동조합”이란게 뭐죠?

가.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2조 1항)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우선 협동조합에 해당하지요!

보육서비스라는 용역의 제공 등을 협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부모, 교사)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니까요!

나. 사업조직의 특성은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좀 더 쉽게 이해됩니다.

협동조합은 소유제도, 통제제도, 수익처분 제도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지요?

소유제도에 있어서는 “지분거래가 없다는 점”

통제제도에 있어서는 “1주1표가 아니라 1인1표라는 점”

수익처분제도에 있어서는 “이용배당이 있다는 점” 등이 특이한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비교

구분	협동조합	주식회사(상장회사)	
소유 제도	소유자	*조합원	*주주(주식 소유자)
	투자한도	*개인의 출자한도 제한	*원칙적으로 출자제한 없음
	지분거래	*없음	*지분거래 가능
	가치변동	*출자가격 변동 없음	*주식시장에서 수시 변동
	투자상환	*상환책임 있음	*상환책임 없음
통제 제도	의결권	*1인1표 *다수의 평등한 지배	*1주1표(주식수에 비례) *소수 대주주의 지배
	경영기구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또는 선출직 상임조합장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혹은 대주주의 자체경영
수익 처분 제도	내부유보	*내부유보를 강하게 선언 *사회적협동조합은 100% 유보	*내부유보는 제한적
	이용배당	*협동조합 배당의 원칙 *출자배당에 선행함	*없음
	출자배당	*출자금의 이자로 이해 *배당률의 제한, 일부 미실시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간주 *제한 없음

위와 같은 특징이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와 다른 점을 드러내 주는데요.

쉽게 말해,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인 단체인지요(ICA의 협동조합 정의).

다. ICA(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의 7대 원칙

(1) 자발적이고 공개적인 조합원 제도 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이는 성, 인종, 종교, 정파, 사회적 신분 등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Democratic member control
이는 조합원들이 출자금액에 관계없이 1인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출자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은 잉여금이 발생하면 반드시 일정액 이상을 적립하여 공동재산으로 두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조합원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4) 자율과 독립 Autonomy and independence
협동조합은 자율적이고 자조적으로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며, 만약 외부와 약정을 맺거나 자본을 조달할 경우 우선적으로 조합원의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5) 교육, 연수 및 정보제공의 촉진 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임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취지와 장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세계경제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며 통합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협동조합 간의 연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Concern for community
협동조합이 조합원과 조합만의 이익추구 뿐만 아니라 조합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함으로써, 사회, 경제, 환경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여야 한다.

공동육아 어린이집도 위와 같은 원칙에 해당되지요.
 해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협동조합의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우선 지난번에 첨부드린 “공동육아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을 참조하시고,
 정부공식사이트(<http://www.cooperatives.go.kr/>)등도 참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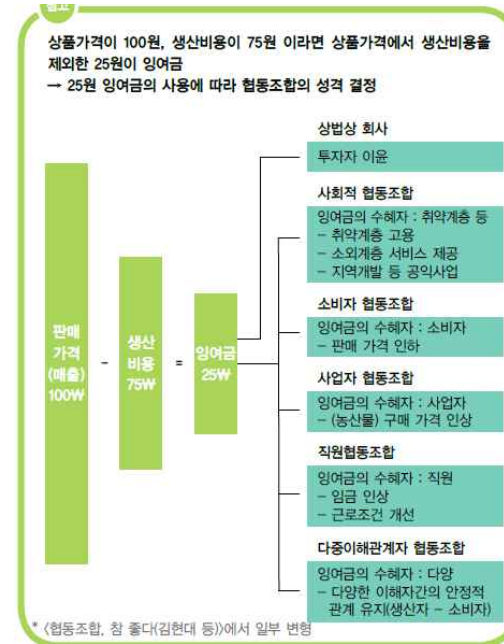
2. 그런데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우선 협동조합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도 있는데요...

[표] 협동조합의 유형 분류

협동조합의 주목적	조합원의 참여 동기	주된 사업의 성격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
조합원의 필요 충족 (이기적 동기)	생활·소비	구매 대행	구매협동조합
		서비스나 자산 공유	이용협동조합
	사업·경영	일자리 제공	직원협동조합
공동업무 대행		사업자협동조합	
사회적 목적의 실현 (이타적 동기)	상호제공·상호이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보건의료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뭐 위에 내용을 다 알아두시라는 것은 아니구요,

우리 어린이집과 같은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함인데요.

공동육아협동조합은

부모들이 원하는 보육서비스를 위해 운영하는 면에선 소비자협동조합적 성격,
 교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적 성격,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격도 가집니다.

여기서, 협동조합기본법에서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 규정을 살펴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2조 3항)

이러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도입취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설립운영안내서> p.58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의 공헌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복지기능을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별도로 규정하여 새롭게 도입하였다. 자활운동, 돌봄노동 등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4,000여 협동조합 지향 단체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고 협동조합 활동을 체계화, 활성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설립운영 안내서> p.49~50

- 다중이해관계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모델로 공동육아협동조합 “사례-w 어린이집”을 소개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도 공동육아어린이집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보고 있는데요,

공공교의 입장도 다음과 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 (1) 공동육아협동조합은 부모, 교사, 아동이 주체인 다중이해관계자 모델
- (2)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사협의 주사업인 사회서비스(교육, 보육, 돌봄, 의료, 사회복지 등) 제공 - 보육사업은 공익사업!
- (3) 배당 가능한 일반협동조합은 영리 추구 가능. 공동육아협동조합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협의 목적과 동일.
- (4)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전통에서 발전되어 온 결사체의 한 형태. 협동조합 일반의 특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사회적인 성격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폐쇄적인 공동체를 지양하고 보다 개방적인 공동체를 지향

(5)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사협이 됨으로써 '사회적 육아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는 협동조합,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조합 지향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공동육아 어린이집인 우리 어린이집도,

협동조합기본법에서의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자료 2]

그 동안 법인이 아니어서 힘들었다!

[공공공의 설명]

협동조합 등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은 계약 체결 등 각종 민사적 거래를 함에 있어서 개인, 회사 혹은 개별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는 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 등), 기금(신용보증기금 등)들과 똑같이 취급되어 그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종전에는 터전으로 사용할 부동산의 매매나 전세계약, 대출계약 등을 체결할 때 개인 명의를 사용해야 했고, 조합 명의를 사용하더라도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개인들 간의 계약관계에 불과하여 조합원들에게 무한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었음.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와 법률관계가 불확실하여 거래를 꺼리거나 별도로 개인의 보증을 보충하거나 우리의 상황을 이해시켜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음

[우리 어린이집에서의 어려움] written by 이사장 '앵두'

▶ 조합 명의를 책임질 조합원을 찾습니다!

협동조합인데, 민법상 조합이라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영구터전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사용한 개인 명의로는 현재 졸업조합원의 것입니다. 현재 명의 변경을 요청 받은 상태이나, 명의를 받을 조합원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날 동안 고민해보니, 원칙상 가장 터전을 오래 다니게 되는 용도방 신입조합원께서 4-5년간 맡아주시면 되는데, 신입조합원이 이 책임을 선뜻 맡기는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책임의 의미를 가장 잘 알 살금방 조합원이 졸업을 앞두고 받는다면, 우리 조합은 계속 현 조합원이 아닌 졸업 조합원의 명의로 조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 개인 대출해 주실 분을 구합니다!

우리어린이집은 공동육아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출자금을 450만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터전 담보 대출이외 부채 부분이 조합원대출로 채워져 있지요. 그 대출을 대환할 때마다, 참 설명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자금 소개가 들어왔습니다. 1:1 매칭펀드방식이구요 출자금, 대출금까지도 자본금으로 쳐서 용자를 해 준다네요. 연 2%이자. 1년 거취 4년 상환 조건입니다. 현재 우리는 아쉽지만 조건이 안 됩니다.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 이니까요. 아쉽습니다! 돈을 들고 찾아와도 할 수가 없다니...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해 협동조합경제가 제도화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색들이 활발하게 되면 신탁이나 사회투자지원재단 등에서 이런 역할들을 더욱 활발하게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합의 대출금 중 은행대출금(4.5%)을 제외하고 난 조합원대출금 정도는 여기서 용자를 하게 되면, 현재 개인대출의 부담도 덜고, 훨씬 낮은 2%이율로 인해 매달 이자부담금이 확 떨어질 것이고 더불어 조합비도 좀 더 현실화 될 수 있을거라는 기대도 됩니다. 만약 우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고 나면 이런 사회적기금 을 유치할 수 있는 조직의 성격이 되는 겁니다.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 협동조합 생태계 내에서 의미있는 또 다른 모색들을 해 볼수 있지 않겠냐는 . 또한, 그것이 조합이 가지고 있는 발전의 경로 상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고민입니다.

「2014년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사회적프로젝트 용자사업」

(재)한국사회투자는 사회적 임팩트를 발생시키는 사회적프로젝트의 발굴, 육성 및 자금의 선순환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사회적프로젝트 용자사업'의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관계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반드시 전환해야 하나요?

1.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공공교에서는 전환하지 않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 먼저,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 신고·인가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어떨까?

(1) 신고·인가받지 않고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신고·인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 불가
- 협동조합기본법 제3조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지 않도록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함
-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2012. 12. 01) 당시에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협동조합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이때,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
 - Ⓢ 2014년 11월 30일 이후에는 인가를 받지 않고 ‘협동조합’ 이 들어간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 누군가 현재 운영중인 공동육아협동조합의 명칭을 먼저 신고·인가 받을 경우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현 공동육아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음.Ⓢ

나. 또한,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제도에서도 배제될 것이라고 합니다.

(2)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제도에서 배제된다.

- 현재의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지원방안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동조합 도시’,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등의 이름으로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므로 신청대상을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협동조합’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므로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처럼 국가 차원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될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협동조합이 아니면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다. 전환안하면 문단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3) 그대로 유지한다 해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고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짐. 민간 협동조합운동 진영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법 제정을 추진했기 때문에 법적 전환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음. 또한 이미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주요사업인 어린이집이 법적 인가를 획득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체인 협동조합이 법인이 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봄. 한국사회에서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먼저 시작한 공동육아 집단이 ‘협동조합’ 명칭을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법외 임의단체로 남을 이유는 없음
- 지금 당장은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시한부일 가능성이 높음.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부모협동어린이집을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후로는 협동조합으로 신고·인가 받지 않은 조합은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될 것임
- 민간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보육내용은 공동육아로, 운영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른 분란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어린이집은 공동육아어린이집의 내용과 형식을 담는데 한계가 있음
- 조합과 어린이집이 모두 미인가로 운영하겠다면 그것은 모든 제도적 지원이 없어진다는 의미. 미인가가 ‘자율성의 보장’이라고 볼 수만은 없음. 특히 보육사업은 미인가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 미인가를 선택할 경우 공동육아협동조합은 특수 모델이 될 수 있음
 - Ⓢ 법인격의 획득은 대중적인 확산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 내용과 형식을 맞추어 협동조합으로 신고·인가 받는 게 나음

즉, 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부모협동어린이집을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보건복지부의 강경한 입장으로 전환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료 4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환하지 않을 경우라도, 지금까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다만,

협동조합이라는 이름과...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예상할 수 있는) 정부지원을 포기하는 것이구요.

다만 공공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1. 왜 제도화인가?)

- ‘사회적 욕아’와 ‘공동체’의 지향을 가지고 부모,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고 운영해 온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앞으로도 협동조합 생태계 안에서 협동 원리가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 협동조합 관련 법률 정비, 홍보, 교육 지원, 인력의 양성,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같은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요청해야
- 제도화된 국면을 적극 활용해서 공동육아운동의 영역을 이 사회 안에서 넓혀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자. 제도화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알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제도화의 장점은 관과 민이 협력해서 대중이 함께하는 판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협동조합 간 내부 거래 활성화’ 같은 협동조합들의 연대도 더욱 활발해져서 공동육아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처음부터 공동육아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고 지역사회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 제도 만드는 것을 지향하였다. - 공동육아를 원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제도로 자리 잡기 위한 틀이 바로 협동조합.
- ‘공동육아협동조합’ 이름이 알려주는 정체성이 있다. 이름이 바뀌면 정체성에도 영향을 준다. - ‘공동육아’ 교육철학과 민주적 운영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협동조합’ 정체성 유지
- 법인격 취득은 자산 보호에 유리하다. - 비법인단체(임의단체)는 대표자 개인이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또한 임의단체의 개인들은 조직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으나 법인은 구성원들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음
- 협동조합은 자치, 자조, 자립 철학이 중요한 자율조직이다. 재정 지원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자.
-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 매년 총회 공중, 등기, 경영공시 등의 행정적 부담은 있으나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떻게 하면 원래의 목적과 운동성을 잃지 않고 공동육아운동을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자.

[자료 4]

전환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1. 공공공의 설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사회적 위상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 현재 공동육아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에 준하는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공동체성의 회복, 부모의 완전한 참여, 보육내용의 건전성, 운영상의 투명성 등의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공동육아협동조합의 특징과 장점은 긍정적인 사회적 의미로 부각되어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법제화되었고, 이제 운영주체로서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가진 (사회적)협동조합을 법제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현재의 공동육아협동조합 참여자(조합원)들이 단순히 ‘내 아이만 건강하게 잘 키운다’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 공동육아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욕아’와 우리 사회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법률로 위상이 인정되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이 늘어나고 활성화되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의 운영 투명성 등의 장점 뿐 아니라 ‘공동육아’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와 부모 참여 등을 통한 공동체성의 회

(2) 협동조합이 늘어나면 사회적 파장력이 확대되고 지원책이 마련될 수도 있다.

-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를 실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함.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더욱 활성화되면 보다 인간중심의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임
- 서울시는 ‘협동조합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⁴⁾, 다른 지자체에서도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진흥법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준하는 지원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음
 - ▶ 사회복지법인이라 해도 정부가 법인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법인이 운영 하는 (정부인정)사업에 대해서 개인이나 다른 유형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음.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토지를 확보하면 정부에서 건축에 필요한 비용(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고 있음
 - ▶ 앞으로 국공립 수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 첫째, 보육서비스의 사회(국가)적 책임 강조
 - 둘째, 공동육아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민주성 강조
 - 셋째,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운영의 효과성(부모 참여의 긍정적 효과) 강조
 - 넷째,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전문성(보육내용과 보육교사) 강조
 - 다섯째, 다양한 보육 철학에 대한 인정과 육성이 필요함을 강조
 - 여섯째, 보육이라는 사회(국가)적 책임을 공동육아협동조합이 분담하고 있음을 강조
 - 일곱째,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중점 육성(중점 육성은 중점 지원과 연결됨)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를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받은 경우 기부금 발급단체가 될 수 있음

(3) 법인격을 갖추어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 과 ‘협동조합연합회’ 는 ‘법인’ 으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 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는 ‘비영리법인’ 으로 한다고 규정
- 주식회사 등이 법인등기부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협동조합 등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협동조합등기부’ 를 갖추어 그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등기하게 됨(협동조합기본법 제69조, 제84조, 제110조, 제115조)
- 협동조합 등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계약 체결 등 각종 민사적 거래를 함에 있어서 개인, 회사 혹은 개별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는 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 등), 기금(신용보증기금 등)들과 똑 같이 취급되어 그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 종전에는 터전으로 사용할 부동산의 매매나 전세계약, 대출계약 등을 체결할 때 개인 명의를 사용

4) 서울시는 공공성 강한 7대 전략분야 중 하나로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선정하여 공동육아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집중지원책을 모색중이고,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기업 육성지원 사업' '마을기업 공간 지원 사업'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재정 지원을 이미 시작하였다.

(7) 사회적협동조합은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을 할 수 있다.

- 사회적협동조합만이 주 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으로 소액대출 또는 상호부조사업 수행 가능(법 제94조). 유사수신업무는 금지되어있으므로 비조합원은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을 이용할 수 없음(법 제95조 제2항). 그러나 조합원 대상으로 수신 업무가 가능하므로 금융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음
- 소액대출 또는 상호부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동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정관에 작성하고 다른 사업과 분리 관리해야 함
- 소액대출사업은 조합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생계비, 교육비, 전세 및 월세보증금, 사업운영 자금 등 소액자금을 신용대출해 주는 사업
 - ▶ 대출자격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에서 정할 수 있음
 - ▶ 대출한도의 총액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음(법 제94조 제1항)
 - 1인당 대출한도는 대출한도 총액 범위 내에서 정관에서 정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시행령 제13조) 5.0% 한도 내에서 정관 규정
- 상호부조사업은 조합원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상호부조회비를 각출하여 적립한 기금 사용
 - ▶ 상호부조회비를 납부한 조합원에게 정관에서 정한 혼례, 사망, 질병, 손해, 사고, 사건 등의 발생 시 일정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시행령 제14조 제1항)
 - ▶ 상호부조금 한도는 납입출자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정관에서 정함(시행령 제14조 제2항)
- ⊕ 공동육아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차등보육료, 품앗이기금, 출자금 대여 제도, 특별조합원제도, 상호회비 등이 해당됨

(8) 사회적협동조합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주 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은 어린이집·방과후 운영이 될 것임. 이 중 보육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 분류되므로 공동육아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음
- 원칙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으나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수익사업이 가능하며, 이 수익사업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에 활용할 수 있음

(9) 법 시행 이전에 생긴 협동조합은 권리의무가 승계된다.

- 법 시행 2년 내에 전환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법 부칙 2조에 의해 동일 법인격으로 간주하여 사업실적, 인허가 및 정액지원이 승계됨
-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기존 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만이 전환 사례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음
 - ⊕ 어린이집은 운영체의 명칭이 변경되면 증여세 부과, 어린이집 인가 변경, 평가인증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법 시행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하게 되어있으므로 전환 사례에 해당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 2년 유예기간동안 신설 협동조합이 기존 공동육아협동조합 명의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주무부처와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음
 - ⊕ 법인 회원 조합들은 전환을 위한 과정을 함께 논의하고 움직일 필요가 있음

•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

- ▷ 전환할 경우 : 명칭이 협동조합 등으로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산 및 권리의 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부과되지 않음. 단 각종 명부상 표시변경 등기를 할 때 발생하는 등록세 등의 세금은 납부해야 함.
 - 협동조합기본법과 관련된 세법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음. 기재부에 공동육아협동조합 사례를 전달하고 과세 여부 확인중
- ▷ 신설할 경우 : 개인들의 집합(민법상 조합)에서 법인(협동조합)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액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 2014년 12월 31일까지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노유자시설은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TV수신료 등이 면제임
 - 마포 참나무어린이집 : 마포세무서로부터 이미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있기에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고 명의 변경만 하면 된다는 답변을 얻음.
 - 대구 직석한어린이집 : 민간(개인 명의)에서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변경할 때 양도 차액을 적게 매매 처리하여 양도세를 적게 낸 사례.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현물출자를 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을 택하면 이월과세 적용 가능(전환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고 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 부과)

2. 물론 다음과 같은 부담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4) 행정업무가 늘어난다.

- 협동조합 설립·전환 시에 ‘협동조합’은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업무 부담이 발생할 것이나 이는 1회적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아님
- 운영의 공개 및 경영 공시 의무 - 협동조합 등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운영을 공개하여야 하므로 정관, 규약, 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조합원 명부 등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 채권자 및 조합원의 열람과 등사 청구가 있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함
 - ▶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협동조합(조합원이 200인 이상, 전년도 자본금 3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시·도 홈페이지 또는 연합회 홈페이지에, 사회적협동조합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기획재정부 또는 연합회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여야 함
 - ▶ 조합원 200인 이상이거나 자본금 30억원 이상인 (일반)협동조합의 의무적 공시자료는 사업계획서, 결산서, 총회 등 조합원 활동,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임
 - ▶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무적 공시자료는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사업결과보고서, 결산서, 총회 등 조합원 활동내역,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비회원의 사업이용 실적, 정관, 운영규약 및 운영규정, 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감독사항 및 그 조치결과임
- 등기의무 - 설립등기, 이전등기, 각종 변경등기, 합병등기, 해산등기 등
 - ▶ 설립등기 사항은,
 -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주사무소 소재지
 - 출자 총좌수와 납입 출자금 총액
 - 설립신고(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설립인가) 연월일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 터전 이전에 따른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이사장·이사·감사 등 임원의 변경은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출자 총좌수와 납입 출자금 총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⁵⁾
- 많아지는 협동조합 행정업무뿐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조합 운영이 요구됨. 상근인력이 없는 현 조합의 구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 ④ 조합관련 문서 작성, 기록물 보관 등 행정 업무가 전보다 많아질 수 있음
 - ④ 이사진의 전문성 확보가 요구됨. 현재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이사진은 실무진으로서 임기 1년이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와 경험 전수의 어려움이 있음. 이후로는 이사진 구성과 임기, 역할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이사 임기는 2~3년으로 늘리고 의결기구와 실무진을 분리하여 이사회는 의결기구로, 소위원회가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음
 - ④ 조합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무 상근 인력이 필요함. 그러나 15~40가구의 소규모 협동조합의 특성상 상근자를 두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됨

정리하면, 앞서 살펴본 장점들이 많은 반면,

행정업무가 늘어날 것이라는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는 보다 전문적인 업무처리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우리 조합원들이 감당할 의지와 여력이 되는지에 대하여,

논의 &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5]

근데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기획재정부와는 문제는 많이 풀어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와의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②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조직변경') 걸림돌
- 기획재정부 입장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이후 '사협')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립되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되기 후 사협이 동일한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 ▷ 공동육아 입장 :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은 영리사업인가 비영리사업인가에 따라 나뉘는 것인데 동일하다. 법적으로 비영리사업인 어린이집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다. 공동육아협동조합처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전부터 타 법에 의거하여 비영리사업을 해온 사업자가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었음을 증명(어린이집 인가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전환 인정 대상이 되어야 한다.
 - ▷ 현 상황 : 기재부 담당자 면담 결과,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여 복지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주기로 구두확답 받음. 전환 유예기간 연장. 전환 후 예상되는 세금문제 등에 대해 공동육아 사례들을 건넌 후 해결안 같이 찾아보기로 함.
 - 보건복지부 입장 : (부모협동어린이집의 운영체는 민법상의 조합으로 충분하며, 보호자(부모)만 조합원이어야 한다.) 사협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되므로 부모협동어린이집이 아니라 다른 유형으로 변경해야 한다. ⇒ 전환 인정이 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다만) 보건복지부가 부모협동어린이집의 운영체로 민법상 조합만을 고집한다면 '법인단체어린이집'으로 인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 2005년 영유아보육법 변경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자동 인가 변경된 사례가 있음.
 - ▷ 공동육아 입장 : 1994년부터 생겨난 공동육아협동조합은 부모, 교사, 지역주민이 함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2004년 영유아보육법 상 '부모협동어린이집'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부모' 참여와 '협동조합' 원리를 강조하는 공동육아협동조합
- Handwritten notes:*
 - (사협) 인정 ⇒ 필수 있다면 안 받여 한 흐름.
 - 전환 인정 ⇒ 필수 있다면 안 받여 한 흐름.
 - 장단: 민법상 조합원 인정, 한국협동 연대회의, 2005년 영유아보육법 변경, (모든 이해관계자) 기재부 면담, 연성희의 예성
 - 이단 인정: 어떻게 할 것인가, 인정, 비단, 법적 정당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

어린이집을 모델로 하여 신설되었음. 8개 협동조합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아니었기에 민법상 조합 규정을 적용했을 뿐. 부모협동어린이집은 부모, 교사,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때 지역사회에 기반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운영이 가능하며, 조합원을 보호자(부모)로만 한정하면 부모-교사의 지위가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심각한 갈등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 제안 :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의 설립 취지와 정체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상 '협동조합어린이집' 유형을 새로 신설해야. 단 영유아보육법 개정 전까지 부모협동어린이집 운영체로 민법에 의한 조합뿐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협까지 포괄하여 유연하게 해석해주시기를 요청.
- ▷ 현 상황 : 국회의원과 접촉중. 기재부 주관으로 보건복지부·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일괄 처리하는 방안 등 모색

위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비협조 문제의 본질은,

보건복지부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

종전에는 민법상 조합인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부모협동어린이집"이지만,

새롭게 전환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법인인 만큼, 영유아보육법상의 "부모협동어린이집"이 아니라고 평가하여,

전환 전에 받았던 인가 등이 유효하지 않아, 모두 다시 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주요한 위치에 계신 관계자 분의 말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위와 같은 문제에 협조해 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십니다.

현재 우선 마포참나무 어린이집 외 1곳이 현재 전환을 진행 중인데요, 8, 9월 내로 전환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협조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으로서는, 일단 전환 여부에 대한 논의를 7, 8월 중으로 마친 후,

전환 결의가 되고 전환이 가능하다면,
9월내로 신청을 마무리하도록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자료 6]

다른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부분은 논의 중에 있구요.

마포 참나무와 대전 친구랑 등이 사협 전환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③ 단위 조합의 움직임(2014년 6월 현재)

- 마포 참나무어린이집 : TFT 논의중. 7월초 전환총회 예정
- 과천 열린어린이집 : TFT 논의중. 7월중으로 전환 여부에 관한 임시총회 예정
- 대전 친구랑어린이집 : 사협 전환 추진 결정. 6~7월에 전환총회 예정
- 안양 친구아놀자어린이집 : TFT 논의중. 연초에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진행상황에 따라 7~8월에 다시 총회 열 수도 있음
- 대구 씨씩한어린이집 : TFT 논의중.
- 강동 재미난어린이집 : TFT 논의중.
- 고양 도토리어린이집 : TFT 논의중. 전체토론회 진행하고 8월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 노원 통통어린이집 : 작년 여름총회 때부터 논의중. 법인 활동 추이 보며 따라가기로 함.
- 성북 행복한우리어린이집 :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 준회원으로 참여. 타 조합 추이를 보기로 함
- 광진 산들어린이집 : TFT 논의중.
- 마포 또바기어린이집 : TFT 논의중. 7월 임시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 은평 소리나는어린이집 : 작년 하반기 총회 때 전환하기로 했음. 일정 미정
- 의왕 개똥이네어린이집 : TFT 논의중
- 송파 파란하늘방과후 : 사협 등록하기로 결정. 7월 이후 창립총회 예정
- 분당 울동방과후 : 사협 등록하기로 결정.
- 강서 봉제산방과후(일반협동조합) : 사협 전환하기로 결정.

이미 전환을 결의한, 마포 참나무 어린이집에서
전환을 위한 열린마루 전에 나누었던 고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 공개는 참나무의 허락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나무 어린이집 고민들

<조합원들의 현재 고민>

- 큰틀은 잡혀있고 방향성에 대한 이의는 없는 편.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고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기엔 어려운 주제로 다가오는 듯.

- 대체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 아니고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논의내용이 아니다 보니 어렵게 느끼고 있는 듯.(ex. 영구터전 문제 때와는 다른 부분)
- 방향성에 대한 결정은 있으나 결정의 근거가 조합원들에게 명확히 다가가지 못함. 이제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안해야 함.
- 우리 결정의 근거를 현실적인 면과 가치적인 면 둘 다 정리해서 확인할 필요 있음.
- '공동육아'에 대해 다시 돌아보고, '공동체'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함. 열린마루에서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각자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후 조합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
- 이 논의 과정 자체가 조합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시작점이 될 것임. 모든 조합원이 공동육아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가지고 나서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나머지는 과제로 가지고 교육이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할 내용임.
- 협동조합 전환특위 만의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수시로 조합원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활하자.

<참나무의 필요성>

- 공동육아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 공동육아를 왜 시작하게 되었으며 공동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끊임없이 겪으면서 토론을 해야 하는 문제임. 귀찮다고 포기해 버릴수 없는 문제. 가치나 지향이 없이는 일반 사립어린이집화 되어 갈것임.
- 마포구성산동 지역에 공동육아철학과 협동조합운영원리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위해 각자 기금을 출자했고, 내 아이만 보내고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집도 지었다. 지역사회에 보육서비스의 기회를 확장하고 기여한 것.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운영되어진 것. 따라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그 위치를 명확히 보장받아야 한다. 계속 임의단체로 존재하며 어느 법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조직체로 남아 있을순 없다.
- 특히 재산권 문제, 책임의 임의성 문제, 조합비와 설립기부금에 대한 의미 문제 등 제대로 해석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면 아주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문제로만 해석되고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의미도 제대로 살려 나갈수

없음. 재정문제 등으로 사고발생의 여지 많음.

- 사회적 경제 지원제도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견. 협동조합 생태계 내에서 우리의 입지를 확보하고 사회투자자금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그러기 위해서도 조합으로 법적 지위를 갖는 문제는 중요하고 이를 통해 조합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각방의 모색 필요함.
- 평가인증이나 서울형처럼 '제도화'에는 양면이 존재함. 하지만 공신력을 갖고 내외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할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 스스로 위상 높아짐.
-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지난 과정과는 (사회문화적으로도. 조합원의 의식도) 많이 달라졌음. 이미 조합원들의 생각과 가치가 다양해져가고 있고 이후 더욱 심해질 것임.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우리들만의 '폐쇄적' 공동체를 벗어나 지역기반 공동육아 즉 열린 공동체를 보다 분명하게 지향하게 될 것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 졸업생 터전살이, 김장, 지역단오행사, 해보내기, 개인잔치 더불어 장애전형이나 다문화전형(전망) 등 이미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 내용임. 모두를 조금씩 더 시야를 확장해서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됨.
- 제도화를 통한 단점에 대해서도 미리 공유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장점을 뒤집으면 단점이 되는 것이므로 장단점을 선택의 조건으로 가지기 보다는 '준비'를 잘 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에 임하면 좋을 듯.
- 단점으로는 행정간섭 있을 수 있고 내부 운영의 책임성 높아질 것. 이는 외부만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이미 요구되어지는 문제였음.
- 어린이집 7살(3, 4년정도)까지만 고민하지 말고 조금 더 넓은 시야로 고민이 필요. 방과후에 대한 고민(친한친구방과후), 지역사회에서의 공유와 누림(와글와글작은도서관),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품앗이전형) 등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장기적인 시선 필요. 우리가 지금껏 해 왔던 내용들이므로 한번 짚어보고 좀 더 확장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듯. 생애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공동체로 성장할수 있음.

[자료 7]

전환시 절차

5. 앞으로의 계획

① 사협 전환할 경우 : 경과 조치에 따른 일정표 참조

▷ 사협 인가 소요기간 : 60일(1회 연장 가능하므로 최대 120일)

▷ 전환 인정을 위해서는 2014년 11월 30일까지 설립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함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단위 조합	[5월 말 ~ 11월 말] 논의/결정						
	[7월 초 ~ 9월 말] 전환/창립 총회			[8월 초 ~ 11월 말] 서류준비 전환신청			
	[9월 초 ~ 11월 말] 인가						[10월 초 ~ 11월 말] 설립등기 신청
법인	[5월 초 ~ 11월 말] 전국순회 간담회						
	[6월 초 ~ 7월 말] 전환매뉴얼		[7월 초 ~ 11월 말] 전환신청 조립지원				
	[7월 초 ~ 11월 말] 열린모임			[10월 초 ~ 11월 말] 관계부처 정책 제안			

이하는 마포 참나무 어린이집에서 준비한 자료를 참조한 것입니다.

전환을 통한 협동조합 설립(법 부칙 2조 관련)

1. 동일법인 간주 요건 및 절차

1)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①협동조합기본법 시행당시(2012.12.1.)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

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것

②시행일(2012.12.1.)부터 2년 이내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

③협동조합기본법 제 85조에서 정하는 설립최소기준을 갖출 것

④총회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서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

⑤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칠 것

⑥협동조합기본법 제106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할 것

동일법인 간주의 효과는 상법인 규정하고 있는 “조직변경”의 법률효과와 유사한 것으로 “조직변경”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전환 전,후의 회사는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회사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① 인.허가, 정책지원대상자격 등의 업력의 승계여부

영업관련 경력(업력)은 별도로 새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에게 그대로 인정된다. 다만, 협동조합으로 명의표시 변경은 필요하며 기존법인을 규율하던 법률 기타 규정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할 경우 관계행정관청에 신고 할 것을 규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함에 주의해야.

②근로관계존속여부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고 전환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직원이었던 사람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된 경우에는 직원의 지위와 조합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즉, 전환전과 후에도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면 합의 해지 하면 된다.

5. 전환절차

①전환총회-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어 전환을 결의(5인 이상/ 다자간)

②창립총회-협동조합형태를 갖추기 위한 총회

③신고, 인가, 출자금 납입 등 후속절차 이행

④전환하였음을 등기

1)전환 전 점검사항

①전환할수 있는 주제인가?

- 기재부 판단 해결됨: 고유번호증을 가진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경우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 또는 법인'대상으로 인정하여 복지부에 협조공문을 보내주기로 함)
- 보건복지부 관련 => 문제가 있음(수도권서북부 순회간담회 자료 참조)

②전환이 가능한 시기여부

- 2012.12.1.~2014.12.1. 전환설립 신고와 설립등기 <신청>까지만 해 놓으면 됨. 등기완료까지가 기준은 아님..

③협동조합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여부

- 기존 업체와 신설협동조합의 업태가 동일한지/사업자등록증과 사업계획서 보면서 비교판단
- 기존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 상부상조 이와 유사한지
- 2012.11.30.까지 요건 충족되고 있는지: 회의서류도 2012. 12.1 전 개최된 회의라야 함.

④설립최소기준을 갖춘 후 전환총회에 보고할수 있도록 준비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음을 전환총회에서 필수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전환총회 보고안건)
- 5인이상의 발기인/ 다중이해관계로 구성

⑤기타

- 전환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 미리 준비(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전환하고자 하는 유형 미리 결정

2)전환총회

:조직변경 결의=전환결의/전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총회

① 전환총회 소집 결정 및 청구- 이사회

② 전환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

- 일시 및 방법: 정관에서 정한대로

- 전환총회 의결권자: 전환 전 조직의 구성원..

③ 전환총회의 의사

- 구성원 과반 출석. 출석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 단, 전환 전 조직의 의결기준이 더 강하면 그걸 따라야 함.
- 의결권 행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서면결의도 가능함.

④ 총회의사록 공증

- 반드시 공증받아야 함.
- 필요서류: 의사록, 진술서, 위임장, 구성원 명부 등 / 전환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미리 동 서류를 준비해 둬야 함.

⑤채권자 보호절차

- 탈퇴자 확인. 채무해결
-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발생할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취지

3) <창립총회> 전 준비사항

- : 창립총회는 전환을 하기로 결의한 후 정관 및 예산안 승인, 임원선임 등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요소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열리는 총회.
- 전환후 조합원자격을 갖게되는 조합원이 의결권자가 됨.
- 전환총회와 창립총회를 동일날 개최할 경우 창립총회 공고 시 전환총회 전환의결에 대해 가결을 조건부로 하여 진행되는 것임을 명시.

① 지분의 정리(조직변경 건이므로 모든 것은 그대로 유지됨을 기본)☞ 법무사 문의 필요내용

- 터전에 대한 정리: 협동조합 명의로 등기신고.
- 은행대출금에 대한 정리
- 조합원 대출금에 대한 정리

②내부유보금 정리

- 기존조직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내부유보금은 신규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됨.

③ 사채상환완료 ☞ 법무사 문의 필요내용

④ 출자금 총액의 결정 및 부족액 납부

출자금총액은 발기인들이 자유롭게 정함. 출자금총액은 등기를 통해 외부에 공지

⑤ 정관안 및 예산안 마련

⑥ 설립동의자모집

- 발기인과 별도로 협동조합의 정관이 규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즉 조합원이 될 자. 창립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하게 됨.

4) 창립총회

① 창립총회 소집결정 및 공고

- 창립총회의 소집은 발기인이 결정하여 공고함.
- (공고문내용) 창립총회의 일시, 장소, 보고 및 의결하여야 할 총회의 목적사항과 창립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의 자격요건을 기재.
- (의결안건) 정관의 상호변경 등 조치/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임원의 선출/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보고안건) 전환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및 채권 총액/ 전환에 반대한 기존조직구성원의 지분정리계획/ 총 출자금 중 30%를 초과한 기존 조직 구성원의 지분 정리계획
- (의결권자) 전환 후 협동조합의 정관이 규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는 자.

② 창립총회의 의사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서면으로 결의권 행사 가능.

③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설립등기하려면 반드시 창립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함. 창립총회 개최 준비 단계부터 의사록 공증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5) 창립총회 의결 후 절차

① 전환 설립신고 및 인가신청-기존조직의 구성원이 2인이상 포함.

② 사무인계

③ 출자금 납입

6)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전환법인에 대한 신규 설립등기 및 기존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신청. 부칙 제2조에 따른 전환은 청산 절차를 요하지 않으므로 해산등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등기기록이 폐쇄된다.

신규등기번호 부여받은 후 마포세무서에 기존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변경신청. 기존 등기번호와 신규등기번호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

이상. 끝.